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엄셋별 의원 발의]

의안번호	2639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4. 11. 12.

발 의 자 : 엄셋별 의원

찬 성 자 : 고영찬 의원

## 1. 제안이유

출생축하금(첫째, 둘째아) 지원을 삭제하고 대상영유아 가정에 금천아이성장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, 대상영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금천아이성장지원금의 정의 신설(안 제2조).
- 조문 내 띄어쓰기 수정 (안 제5조).
- 출생축하금 중 첫째아, 둘째아 지원 규정 삭제(안 제6조).
- 금천아이성장지원금 지원기준 등 신설(안 제6조의2).
- 환수조치에 금천아이성장지원금 내용 신설(안 제8조).
- 별지 제1호 서식 중 출산을 출생으로 수정(안 별지 제1호).

사. 별지 제2호 서식 성장지원금 신청서 신설(안 별지 제2호).

### **3. 참고사항**

가. 관련법령 :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4호, 제4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기 타

1) 현행 조례 : 별도 첨부

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도 첨부

3) 입법예고 : 2024. 11. 15. ~ 11. 21.

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금천아이성장지원금”이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.

제5조제1항 본문 중 “금천구(이하“구””를 “금천구(이하 “구”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 각호에 따라 예산”을 “예산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별지 서식”을 “별지 제1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금천아이성장지원금 지원내용 및 절차)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천아이성장지원금(이하 “성장지원금”이라 한다)을 지원할

수 있다.

②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세부터 4세인 영유아의 보호자로 한다.

③ 지원대상자는 대상영유아의 연령이 도래한 날로부터 또는 신청일 현재 구 거주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 기준 6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(이하 “동장”이라 한다)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금천아이성장지원금 신청서(이하 “신청서”라 한다)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구청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성장지원금을 지급한다.

⑤ 제1항의 성장지원금은 금천G밸리사랑상품권(정책발행상품권)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 중 “출생축하금”을 “출생축하금 및 성장지원금”으로, “그”를 “지체없이 그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홍보물 및홍보물품”을 “홍보물 및 홍보물품”으로 한다.

별지 서식을 별지로 한다.

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

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원 대상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의2의 지원내용에 따라 금천아이 성장지원금 사업을 최초로 시행하는 연도 1월 1일 이후 대상 영유아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“금천아이성장지원금”이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.</u></p>
<p>제5조(지원대상자) ①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서울특별시 <u>금천구(이하“구”라 한다)</u>에 출생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. 다만, 부모가 출생아동 출생일 현재 구 거주일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5조(지원대상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금천구(이하 “구”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지원기준 등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축하금을 지원할 수</p>	<p>제6조(지원기준 등) ① ----- ----- -----</p>

있다. 단, 출생아동이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생아동별로 태어난 순서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.

1. 첫째아 30만원

2. 둘째아 50만원

3. 4. (생략)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출생축하금은 출생아동 출생일, 또는 구 거주일 1년 미만인 경우 전입일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별지 서식의 출생축하금 신청서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<신설>

----. <단서 삭제>

<삭제>

<삭제>

3. 4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예산-----  
-----  
-----.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별지 제1호서식-----  
-----  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6조의2(금천아이성장지원금 지원내용 및 절차)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천아이성장지원금(이하 “성장지원금”이라 한다)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세부터 4세인 영유아의 보호자

로 한다.

③ 지원대상자는 대상영유아의 연령이 도래한 날로부터 또는 신청일 현재 구 거주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 기준 6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(이하 “동장”이라 한다)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금천아이성장지원금 신청서(이하 “신청서”라 한다)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구청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성장지원금을 지급한다.

⑤ 제1항의 성장지원금은 금천 G벨리사랑상품권(정책발행상품권)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환수조치)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등으로 출생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비용이나 물품을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.

제9조(교육 및 홍보) ① (생략)

제8조(환수조치) -----  
----- 출생축하금  
및 성장지원금-----  
---- 지체없이 그 -----  
-----.

제9조(교육 및 홍보) ① (현행과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홍보물 및홍보물 품 등을 제작·배포할 수 있다.

**출산축하금 신청서**

신청인	성명			생년월일		
	출생아동과의 관계			전화번호		
	주소					
	관내거주기간 ※ 1년 미만 시 연임할 경우					
출생아동	성명			생년월일		
	성별	남 [ ] 여 [ ]	출생순위	첫째 [ ] 넷째 이상 [ ]		
급여계좌	은행명			예금주		
	계좌번호					
<small>본인은 금천구 출산축하금 지급대상 신청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의 수집,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.(필수)</small>						
	수집목적	수집항목	보유기간			
	금천구 출산축하금 지급	신청인의 성명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주소, 관내거주기간, 출생아동의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출생순위, 지급신청제외정보	수집일로부터 3년			
	<small>*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권리를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. 그러나 불응할 경우 금천구 출산축하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</small>		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					
	<small>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추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</small>		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					
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출산축하금을 신청합니다.						
년 월 일						
신청인 : (인)						
금천구청장 귀하						

<신 설>

같음)

② -----  
 ----- 홍보물 및 홍보물  
품 -----.

**출생축하금 신청서**

신청인	성명			생년월일		
	출생아동과의 관계			전화번호		
	주소					
	관내거주기간 ※ 1년 미만 시 연임할 경우					
출생아동	성명			생년월일		
	성별	남 [ ] 여 [ ]	출생순위	첫째 [ ] 넷째 이상 [ ]		
급여계좌	은행명			예금주		
	계좌번호					
<small>본인은 금천구 출생축하금 지급대상 신청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의 수집,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.(필수)</small>						
	수집목적	수집항목	보유기간			
	금천구 출생축하금 지급	신청인의 성명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주소, 관내거주기간, 출생아동의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출생순위, 지급신청제외정보	수집일로부터 3년			
	<small>*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권리를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. 그러나 불응할 경우 금천구 출생축하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</small>		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					
	<small>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관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</small>		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					
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출생축하금을 신청합니다.						
년 월 일						
신청인 : (인)						
금천구청장 귀하						

### 금천아이성장지원금 지원 신청서

신청인 (지원대상자)	성명		생년월일	
	연락처		대상영유아와의 관계	
	주소			
대상영유아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			
	관내거주기간 ※6개월 미만 시 견인일 기입			
<p>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 조례」 제6조의2에 따라 금천아이성장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</p>				
<p>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</p>				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	<p>①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금천아이성장지원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및 정액발행시스템권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</li> <li>-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한 가계관계등록특별정보 등의 개인정보 확인</li> </ul> <p>② 수집이용처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상영유아 : 성명, 생년월일, 주소(거주지 포함), 법정대리인</li> <li>- 지원대상자 :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</li> </ul> <p>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: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</p> <p>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: 관계기관</p> <p>※ 동의 거부 시 금천아이성장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</p> <p>• 위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에 동의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</p> <p>• 부당수집으로 적발된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환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</p>			

# 현행조례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4. 3. 1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444호, 2024. 1. 11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출생을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생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생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4.1.11.>

[전문개정 2019.7.19.]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개정 2022.8.10., 2024.1.11.>

1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 또는 후견인,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·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출생축하금”이란 출생장려와 출생아동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. [전문개정 2019.7.19.]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출생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.<개정 2024.1.11.>

[전문개정 2019.7.19.]

제4조(출생 및 양육지원사업) 구청장은 출생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개정 2024.1.11.>

1.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
2. 아동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
3. 출생장려를 위한 홍보
4. 그밖에 구청장이 저출생 대책 및 출생장려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[전문개정 2019.7.19.]

[제목개정 2024.1.11.]

제5조(지원대상자) ①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출생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. 다만, 부모가 출생아동 출생일 현재 구 거주일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. <개정 2022.8.10., 2024.1.11.>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생아동이 부모의 사망, 이혼,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. <개정 2022.8.10.>

③ 출생축하금 대상 출생아동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. 다만, 재혼 가정인 경우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에 포함하며, 주민등록 동거인란에 등재된 배우자의 실제 양육자녀도 순서대상에 포함한다. <개정 2022.8.10., 2024.1.11.>

④ 해당 출생아동의 출생과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생축하금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

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 <개정 2022.8.10., 2024.1.11.>

[전문개정 2019.7.19.]

제6조(지원기준 등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. 단, 출생아동이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생아동별로 태어난 순서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. <개정 2024.1.11.>

1. 첫째아 30만원
2. 둘째아 50만원
3. 셋째아 70만원
4. 넷째아 이상 100만원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2.8.10., 2024.1.11.>

③ 출생축하금은 출생아동 출생일, 또는 구 거주일 1년 미만인 경우 전입일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별지 서식의 출생축하금 신청서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 <신설 2024.1.11.>

④ 출생축하금 신청인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 중 1인으로 한다. <개정 2024.1.11.>

[전문개정 2019.7.19.]

제7조(중복 지원 제한) 출생축하금 및 출생축하용품 지원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 중복된 지원을 받을 수 없다.

[본조신설 2024.1.11.]

[중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<2024.1.11.>]

제8조(환수조치)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등으로 출생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비용이나 물품을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7.19., 2024.1.11.>

[제7조에서 이동 <2024.1.11.>]

제9조(교육 및 홍보) ① 구청장은 출생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저출생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출생 및 양육 지원 제도를 홍보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·배포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4.1.11.]

제10조(출생·양육 지원 자문위원회) 출생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·양육 지원 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출생 및 양육 지원 정책의 제안 및 발굴에 관한 사항
3. 출생 및 양육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
4. 출생 및 양육 지원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방안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구청장이 출생 및 양육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[본조신설 2024.1.11.]

제11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, 위원회의 부위원장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출생 및 양육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

2.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(이하 “위촉위원”이라 한다)

가.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추천을 받은 구의원

나. 출생 및 양육 지원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다. 출생 및 양육 지원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장

[본조신설 2024.1.11.]

제12조(위촉위원의 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4.1.11.]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(제590호, 2009.8.18)

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제684호, 2011.10.27)

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제1046호, 2019.7.19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(제1246호, 2022.08.10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(제1444호, 2024.1.11.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. 3. 1.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출생축하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제1항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출생아 가정부터 소급 적용한다. 다만,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경우에 한한다.

[별지 서식] 출산축하금 신청서

# 관계법령

## 영유아보육법

[시행 2024. 9. 20.] [법률 제20380호, 2024. 3. 19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8. 12. 19., 2011. 6. 7., 2023. 8. 8.>

1. ~ 3. (생략)
4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·후견인,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
제4조(책임)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1. 23.>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6. 7., 2011. 8. 4., 2020. 12. 29.>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,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5. 18., 2020. 12. 29.>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 <신설 2024. 2. 6.>

[전문개정 2007. 10. 17.]